

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373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11. 16.
제출자 김기남 의원
권민찬 의원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11월 16일 김기남 의원, 권민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, 다중이용시설, 신축 공동주택,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및 환기설비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김포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 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실내공기질 유지기준, 측정,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~제7조)
- 마. 보고 및 검사,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9조)
- 바.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사.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규정함(안 제11조)
- 아.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등을 규정함(안 제12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, 신축 공동주택,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